

「햇살하우징」 사업 안내문

1. 사업명 : 햇살하우징사업
2. 신청기간 : '25.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·군별 공고에 의함
3. 사업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309가구)

※ 신청제외 대상

- 1) 수선유지급여 수급자(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)
 - ※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(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)
- 2)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
- 3)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(직전 3개년 해당)
 - 【예시】 신청연도가 2025년인 경우, '22년·'23년·'24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
- 4) 민·관 유사(중복)사업(비용용자 포함) 대상으로 선정된 자(당해연도) 및 수혜자(직전 3개년)
- 5)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
4. 접수처 : 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5. 지원금액 : 가구당 500만원 이하(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 포함)
6. 지원내용

- 주택상태,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, **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**

구분	지원 항목
① 난방비	기밀성 창호/문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
② 전기료	LED 조명(고효율 조명기기) 교체
③ 냉·난방기 설치·교체	고효율 냉·난방기(보일러, 에어컨) 설치 또는 교체
④ 기타(소규모 공사) (+ ①,②,③ 병행 지원)	도배, 장판, 싱크대, 화장실, 백색도기류,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

※ (제외 대상)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, 단순 가전기기 교체

7. 사업일정 ※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(1~4월)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
- (5~7월) 현지조사
- (6~9월) 공사 시행
- (공사후) 만족도 조사

8. 문의처 : 경기도청 주택정책과(☎031-8008-3226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